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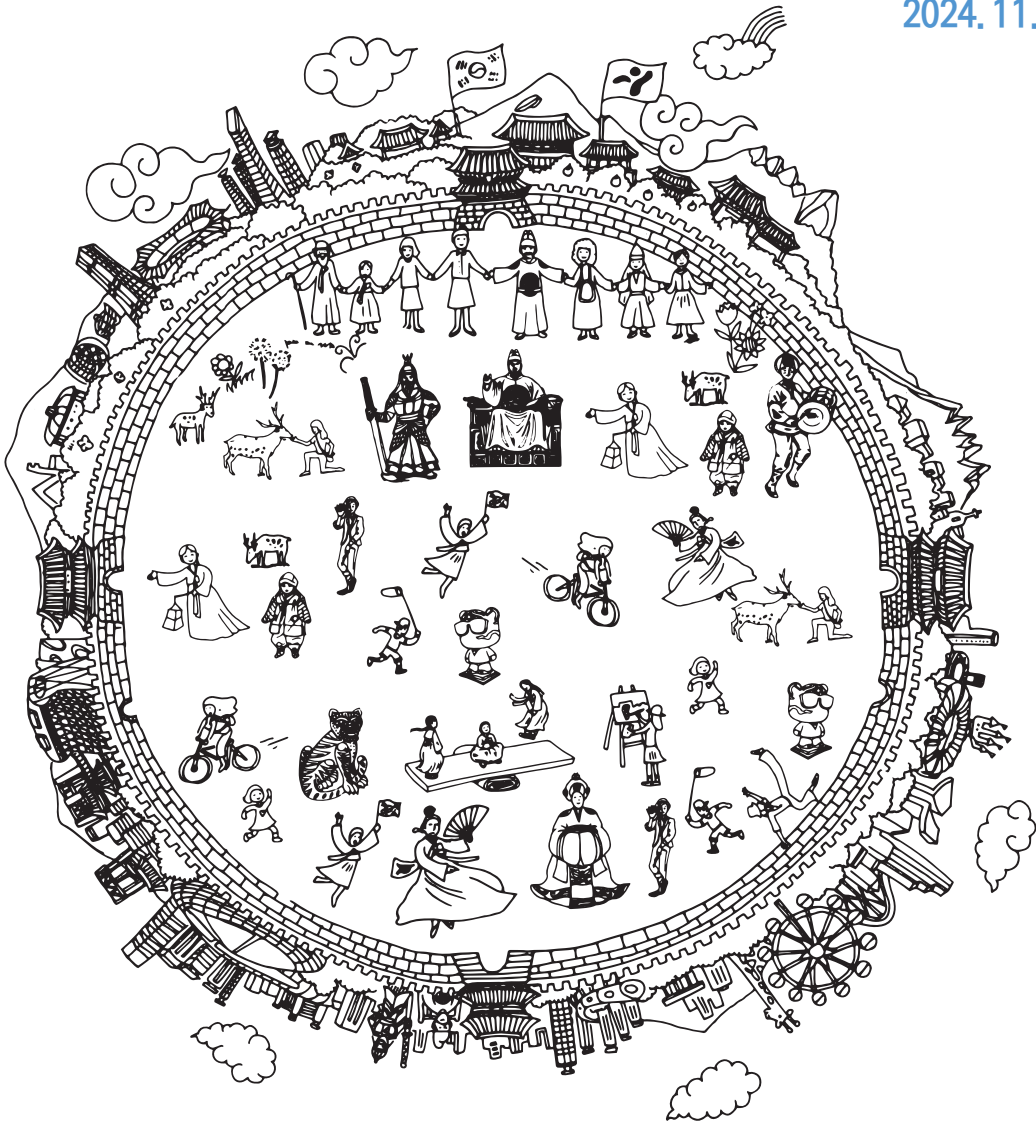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4021호
2024. 11. 13.(수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 등

[규 칙]

제467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

[예 규]

제738호 서울특별시수신자기호 규정 폐지규정 4

◆ 공 고

제2024-3082호 통행의 금지·제한공고 6

자치법규 등

[규 칙]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671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4년 11월 13일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비전전략특보, 미디어콘텐츠수석, 기획수석, 메시지수석, 문화수석, 디지털영상수석을”을 “비전전략특보, 소통수석, 미디어콘텐츠수석, 기획수석, 메시지수석, 문화수석, 디지털영상수석은”로, “비전전략특보, 미디어콘텐츠수석, 기획수석, 메시지수석, 문화수석, 디지털영상수석은”을 “비전전략특보, 소통수석, 미디어콘텐츠수석, 기획수석, 메시지수석, 문화수석, 디지털영상수석은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2항 중 “도시경관계획 및 도시빛정책”을 “도시경관 및 빛 정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“정책”을 “정책(경관계획 수립 제외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.

제21조제5항제13호를 제1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정책 기준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4. 「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상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15. 역세권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16.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제21조제6항제1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DDP일대 활성화 정책 조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제21조제8항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“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추진”을 “정비사업, 특별계획구역, 준공업지역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13.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우수 디자인 건축물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정책결정 보좌 인력 확보 및 서울 대개조(大改造)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정 행정수요에 적합한 정책 결정 보좌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임기제 직위 “소통수석” 신설

나. 市 공간전략과 연계한 도심복합개발 실행력 강화 및 도심활성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도시공간본부 사무분장 정비

- (도시공간전략과) 「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,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정책 기준 조정 등 신규 사무분장 명시, ‘역세권 활성화 사업’ 및 ‘공공기여 기금 운용’ 업무 이관 (←도시재창조과, 도시계획과)
- (도시재창조과) DDP 일대 활성화 사업 사무분장 명시
- (신속통합기획과) 정비사업 외 신속통합기획 확대 대상 명시
- (도시관리과) 경관심의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경관계획 수립 관련 업무 이관 (←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)

[예 규]

◆ 서울특별시예규 제738호

서울특별시수신자기호 규정 폐지규정

서울특별시수신자기호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4년 11월 13일

서울특별시수신자기호 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— <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> —

1. 폐지이유

본 규정의 상위법령인 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이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(현,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)으로 전부 개정(' 11. 12. 21.)되면서 '수신자기호'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규정의 존치 근거 상실 및 사문화로 정비가 필요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수신자기호 규정」을 폐지함.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3082호

[

[✓] 통행의 금지·제한

[] 차량의 운행 제한

]

공고

「도로법」 제76조 제1항·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

[

[✓] 통행의 금지·제한

[] 차량의 운행 제한

]

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3일
서울특별시장

도로의 종류	서울특별시도	노선명	과해 ~ 삼성선
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	○ 총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○ 기타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(건설기계 포함)	구간	이수고가도로 (C-Line, L=838.7m)
기간	2024년 11월 8일부터 별도 해제 공고 시 까지		
이유 도로시설물 등의 구조 보전 및 차량 통행,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			
그 밖의 사항 문의처: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☎ 02-2133-1974, 1975)			
첨부서류: 위치도 및 전경사진			

붙임

위치도 및 전경사진



이수고가 위치도(통행제한 구간: C-Line, L=838.7m)



이수고가 전경사진(C-Line 상부)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